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- 63호

「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」 일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10일

## 대전광역시의회의장

###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환경교육 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재정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.

나. 환경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.

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 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(참조 : 복지환경  
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

(전화 042-270-5127, FAX 042-270-5039, E-mail : ychml1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#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환경교육센터)①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
2.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3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4.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
5.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
6.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시장은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「민법」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 중 “사회 환경교육 기관, 각급 학교 및 그밖의 사업자”를 “지역환경교육센터, 각급 학교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·단체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9조(환경교육의 위탁) <u>시장은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환경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9조(환경교육센터) ①<u>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</u></li> <li>2. <u>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</u></li> <li>3. <u>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</u></li> <li>4. <u>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</u></li> <li>5. <u>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</u></li> <li>6. <u>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u></li> </ol> <p>②<u>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「민법」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<u>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</u></p>

<p>제10조(재정지원) 시장은 <u>사회 환경교육 기관,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따로 정한다.</u></p> <p>제10조(재정지원) 시장은 <u>지역환경교육센터, 각급 학교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·단체</u> --  -----  -----  -----</p>
--	---

# 비 용 추 계 서

1. 의안명 :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 발생 요인

-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

나. 관련조문

- 제9조(환경교육센터) ②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「민법」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3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시 환경교육센터 운영

나. 추계 결과 : 총 1,500백만원 (5년간)

다. 연도별 비용추계표(별첨)

라. 재원조달방안 : 국비 50%, 시비 50%

4.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: 없음

5. 작성자 : 기후환경정책과 환경 7급 권오설

##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	
세 입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	
국 비 (환경교육센터운영)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	
세 출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	
국 비 (환경교육센터운영)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	
시 비 (환경교육센터운영)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	
재원 조달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500,000	
의 존 재 원	소 계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
	보 조 금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
	지방교부세						
자 채 수 입	소 계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
	지 방 세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 기 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## 관계법령

### □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

제15조(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)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·단체일 것  
2.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

3.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

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, 전문인력,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,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